

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수정안」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임실군의회의장



임실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수정안 (장종민 의원 대표발의)

1. 수정이유

가. 제정 조례안의 자치경찰실무협의회와 기 시행 중인 임실군 지역치안 협의회 실무협의회 간 기능 중복이 예상되어 자치경찰실무협의회 운영 조항 수정

2. 주요내용

가. 자치경찰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항 수정

- 제정 조례안 제9조제1항의 조문내용 중 ‘자치경찰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해야 한다.’를 ‘자치경찰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
- 제정 조례안 제9조2항 삭제
- 제정 조례안 제9조3항을 같은 조 제2항으로 하고 조문내용 중 ‘협의하여 정한다’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로 수정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4년 10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1) 주 소: (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의회(의회사무과)

2) 전 화: 063-640-2883, 팩스 063-640-2699

3) 전자우편:charity81@korea.kr

4. 수정안: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개 정 안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략)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u>시장</u> 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지원사업)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u>군수가</u> ----- -----
제9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자치경찰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u>구성·운영</u> 해야 한다. ② <u>협의회장은 임실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과 임실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u> ③ 그 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u>정한다</u> .	제9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① --- ----- ----- ----- ----- <u>구성·운영</u> 할 수 있다. <u><삭 제></u> ② ----- ----- -- <u>정할 수 있다</u> .

임실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의 특성과 임실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범죄예방 시설물”이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 불안이 현저한 장소 또는 반복적인 112 신고와 민원이 빈번하여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영상 정보처리기기 등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실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방범 CCTV 등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운영·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 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군수는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비에 대하여 건축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따르게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범죄 취약지 및 112신고가 빈번하여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2. 방치된 공가·폐가·주택과 그 대지 중 청소년 범죄 및 탈선 우려 장소로 반복적인 112신고와 민원이 빈번하고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

3. 공가·폐가·주택과 그 대지 중 강력범죄가 발생하여 주민 불안이 현저한 장소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9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자치경찰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그 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수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원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범죄피해자 보호
4.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5.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6.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7.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8.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 2) 주민참여 방법활동의 지원 및 지도
- 3)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 4)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
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의 예방
-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
· 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
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 2)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 4)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

②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라목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